

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11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2. 27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2. 27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3. 18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농촌정책과장 김화진)

가. 개정이유

-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자 범위 확대(가족 포함) 및 임대기간 조정, 농기계 운반비용 인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과 영농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임대사업 사용자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(안 제2조)
- 임대기간 조정(안 제8조)
 - 일 단위에서 반일 단위 추가
- 임대농기계 배송비 인하(안 제9조)
 - 왕복 3~4만원 → 2만원
-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한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기준 정비(안 제12조)
-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보완(안 별표 1)
 - 1포대(40킬로그램) 당 1,000원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및 시행령
-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- 합 의
 - 복지지원과-1916(2025. 1. 13.)호,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 없음
- 기 타
 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00호
 - 가) 예고기간: 2025. 1. 17. ~ 2025. 2. 6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 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 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 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 - 5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, 농기계 임대 사용자의 편의 확대를 위해 사용자 범위 확대, 임대기간 조정 및 운반비용 인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, 일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2조) 정의

- 농기계 임대사업 사용자의 범위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까지 확대함.

- (안 제8조) 임대기준 등

- 임대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입·출고 시간을 현행 09~18시 1일 단위를 전일 및 반일(09~13시)로 개선하고, 면허 또는 안전교육 수료증을 지닌 사람에 한하여 임대할 수 있는 농기계 기종을 변경함.

- (안 제9조) 사용료 등

- 제1항의 별표 1에 따른 임대농기계 사용료 징수 기준표 중 광역방제기 및

콩 정선 작업기 사용료를 삭제 및 추가하고, 안제4항에서는 임대농기계 운반 사용료를 일원화하고 현행 3 ~ 4만원을 1회 1만원(왕복 2만원)으로 인하함.

- (안 제12조) 사용계약의 취소 및 정지

- 임대농기계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계약의 취소 및 정지 기준 등을 현행 회수별 구분(1회 1개월, 2회 3개월, 3회 6개월) 규정한 사항을 6개월로 통일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, 농업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3. 18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